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5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09. 2. 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구, 과표적용율)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재산세율이 종전의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및 인하되어 세부담이 완화된 반면,

○ 도시계획세는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세율인하 없이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1)「지방세법」제3조 제1항 및 제237조 제2항

2) 도 표준 조례안 : 도 세정과-5269(2009. 4. 14)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성주군 조례 호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 본문 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4**로 한다.